

의안번호	2209781
의 퇴 인	윤준병의원
회 답 일	2025.5.9.
추계번호	25D2254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	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광역지방자치단체”라 함)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중 소속 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8·9급 국가공무원의 사법경찰리 직무 수행(안 제6조의2)

- 고용노동부에 따르면,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국가공무원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,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8·9급 국가공무원도 현행법 제6조의2제1항1)에 규정

1)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 ①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「근로기준법」
2. 「최저임금법」
3. 「남녀고용평등법」
4. 「임금채권보장법」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리²⁾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안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 중임

- 현행법 제5조³⁾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중 소속 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사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, 7급 이상의 경우 사법경찰관, 8·9급인 경우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
-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8·9급 국가공무원 중 소속 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, 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실시, 수사·증거수집활동을 위한 경비 소요 및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의 수사활동비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공무원의 수와 직무교육 비용, 수사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및 수사활동비 지급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 기준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중 근로감독지원을 위해 122억 4,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이 중 근로감독관 수사활동비로 92억 1,600만원, 근로개선 업무지원으로 30억 3,200만원이 배정됨

-
6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7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 8.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 9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
 10. 「근로복지기본법」
 11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 12.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13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 14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 15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16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 17.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 18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(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)
 19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(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)
 - 2)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원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며 범죄 현장 조사, 피의자 진술 조서 작성, 증거물 관리 등 수사 과정에 참여
 - 3)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
 51.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, 육아휴직 급여,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·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